

# 조선전기 倭人統制策과 통교위반자의 처리

한 문 종

I. 머리말	IV. 통교 위반자의 유형 및 처리
II.倭人統制策의 실시배경	1. 서계를 위·변조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자
III.倭人統制策의 내용	2. 도서를 위·변조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자
1. 書契에 의한 통제	3. 문인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위조해서 도항한 자
2. 圖書에 의한 통제	4. 세견선 미정약자 및 수외 통교자
3. 文引에 의한 통제	5. 처음 통교한 자 및 통교단절 후 다시 통교한 자
1) 行狀·路引·文引의 源源	6. 王命을 稱託해서 사절을 파견한 자
2) 文引制度의 정약	7. 使節 또는 格軍을 稱託한 자
4. 癸亥約條와 歲遣船의 제한	8. 기타
1) 癸亥約條의 정약	V. 맷음말
2) 歲遣船의 제한	【토론녹취문】

## I. 머리말

조선전기 대일정책의 핵심은 왜구의 禁壓과 통교왜인에 대한 통제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왜구문제는 고려 멸망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 이 때문에 조선에서는 건국직후부터 海洋의 방어에 충실히 하는 한편, 외교적인 노력과 왜구에 대한 회유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409년을 전후하여 왜구의 침입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또한 1419년에는 왜구의 소굴로 인식되었던 대마도를 무력으로 정벌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조선정부의 왜구대책과 대마도정벌로 인하여 왜구의 침입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일본으로부터의 통교자는 증가하였다. 이에 조선에서는 왜인들이 정박하는 浦所를 제한하는 한편 書契, 圖書, 文引制와 歲遣船의 정약 등 여러 가지 왜인통제책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선의 왜인통제책을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위반하면서 도항하는 왜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을 위사라고 칭하였다.<sup>1)</sup> 이 통

1) '위사'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사의 개념이나 기

교외반자는 일본에서 조선에 파견하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존재로, 외교사상 보기 드문 현상일 뿐만 아니라 당시 朝・日 관계의 특수한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조일외교의 성격 및 특징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통교위반자에 대한 연구는 河宇鳳, 孫承喆, 閔德基, 韓文鍾 등에 의해 부분적으로 행하여졌을 뿐 본격적인 연구는 전혀 없다.<sup>2)</sup> 반면에 일본에서는 식민지 시기부터 위사의 존재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기 시작

---

준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에서의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행하여졌다. 그 중 米谷均은 위사를 「제3자가 어떤 通交名義를 사칭해서 파견하는 허위의 사절」로, 橋本雄은 「위사」를 제3자가 어떤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유무에 상관없이)의 명의를 빌려서 사절을 파견하여 무역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거짓의 외교사절이라고 정의하였다.(米谷均, 1997, <16世紀日朝關係における僞使派遣の構造と實態> 『歴史學研究』 697, 橋本雄, 2004, <宗貞國의 博多出兵과 僞使問題> 『『조선왕조실록』 속의 한국과 일본』 경인문화사). 반면에 伊藤幸司는 「파견 주체 또는 사인이 통교명의를 사칭하는 사절」을 위사로 정의하였다. 그는 또한 ① 通交名義나 서계의 상태, ② 일본국 왕사나 巨酋使의 사절이 외교승이 아니고 俗人인 경우, ③ 宗成職 이후 통교를 하기 시작한 深處倭, ④ 일정기간 통교가 단절되었다가 宗成職 이후에 통교를 다시 재개한 심처왜 등은 위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를 위사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였다.(伊藤幸司, 2002, <偽使の時代> 村井科研福岡 심포지움 發表要旨)

그러나 이들의 위사에 대한 개념과 기준은 약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書契・圖書・文引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수직왜인이 직접 도항하지 않고 통교자를 파견한 경우, 수도서인・세견선 정약자가 아닌 자가 도항한 경우에 이를 위사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여부 등 위사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偽使」의 使는 使臣, 使節, 使者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는 국가의 공식적인 외교사절 또는 사신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선전기 일본에서 조선에 도항하는 자들은 국가간의 공식적인 사절이 아닌 통상교역을 목적으로 하는 통교자 또는 통교무역자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거짓의 통교자 또는 통교무역자를 僞使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그들의 성격 및 도항목적을 그대로 반영하는 의미에서 「통교위반자」로 부르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선의 웨인통제책인 書契・圖書・文引・歲遺船定約・受職倭人船 등 웨인입국규정을 위반하고 조선에 도항한 자들을 총칭해서 「통교위반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 2) 孫承喆, 1992, <朝鮮前期對琉球交隣體制의 構造와 性格> 『巖趙恒來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 河宇鳳, 1994, <朝鮮前期의 對琉球關係> 『國史館論叢』 59, 국사편찬위원회
- 閔德基, 1994, <朝鮮朝前期の「日本國王」觀 -敵禮の面から-> 『前近代東アジアのなかの韓日關係』, 早稻田大學出版部
- 韓文鍾, 2000, <조선전기 日本國王使의 對朝鮮通交>(한일관계사학회 월례발표요지)
- 韓文鍾, 2002, <조선전기 일본의 大藏經求請과 한일간의 문화교류> 『韓日關係史研究』 17, 한일관계사학회

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부터 위사의 사례를 개별적으로 실증 확정하고 위사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 후반 對馬宗家 소장의 도서가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위사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위사의 발생배경 및 실체에 대한 연구가 상당부분 진척되었다.<sup>3)</sup>

보다 넓고 포괄적인 의미의 위사인 통교 위반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인통제책과 그 위반자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종래의 연구는 왜인통제책의 실시배경과 제도에 집중되어 있을 뿐 통교 위반자에 대한 처리 및 대책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sup>4)</sup>

따라서 본 보고에서는 통교위반자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먼저 조선정부가 왜인통제책을 실시한 배경과 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조선왕조실록』을 토대로 조선의 왜인통제책을 위반하고 도항한 사절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위반자에 대한 조선정부의 처리 및 대책을 고찰하려고 한다. 이를 토대로 이후 통교 위반자들의 불법성과 조직성을 규명하고, 나아가 조선시대 한일관계에서 통교 위반자가 차지하는 역할 및 의의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 II. 倭人統制策의 실시배경<sup>5)</sup>

조선초기의 왜구대책과 외교적인 교섭의 결과 왜구는 점차 使送倭人·興利倭人·向化倭人 등 평화적인 통교자로 전환되어 갔다. 그리하여 태종 9년(1409)을 전후하여

이지선, 2002, <朝鮮前期 日本國王使 研究>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위의 논문 중에서 孫承璣과 河宇鳳은 琉球國王使를 사칭한 위반자에 대해, 閔德基와 韓文鍾, 李志善은 日本國王使를 사칭한 위반자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3) 橋本雄, 앞 논문

4) 통교통제책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참고된다.

中村榮孝, 1931, <室町時代の日鮮交通と書契及び文引>上·下 『史學雜誌』 42-10·

43-11(中村榮孝, 1965, 『日鮮關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東京, 所收)

李鉉淳, 1964, <入國倭人> 『朝鮮前期 對日交涉史研究』 韓國研究院

河宇鳳, 1994, <朝鮮前期의 對日關係>『講座韓日關係史』 玄音社

韓文鍾, 1996, <朝鮮前期 對日外交政策 研究-對馬島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5) 왜인통제책의 실시배경과 내용은 한문종, 앞 논문(1996)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자세한 것은 앞 논문(1996)을 참조하기 바람.

왜구의 침입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에 일본 각지로부터 渡航하는 倭人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아직 통교왜인에 대한 제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왜인들이 해안지방을 마음대로 왕래하면서 무역을 하기도 하고, 降倭들과 접촉하면서 연해 병선의 허실을 정탐하는 등 치안상의 폐단이 야기되었다. 또한 조선에 渡航하는 倭人은 통교인이지만 진상과 회사의 조공무역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정부는 그들이 도항해서 귀환할 때까지의 접대비용을 부담하였다. 게다가 왜인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浦所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폐단이 발생하자 그들의 접대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온 물품을 대신 매매해주었는데, 이는 조선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통교자의 증가는 조선정부의 치안상의 혼란과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 때문에 통교왜인의 통제는 대마도정벌 이후 왜구의 재발 금지와 함께 조선초 기 대일외교의 근간이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對馬島征伐 이후 왜구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왜선이 도항하여 정박할 수 있는 浦所를 제한하는 한편 書契·文引制度·癸亥約條 등의 왜인통제책을 정비하였다. 그와 아울러서 使船의 定數와 乘船人員, 滯留期間, 過海糧, 紙料, 각종 宴會의 장소와 횟수에 이르기까지 왜인접대규정을 상세하게 정비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왜인들의 횡포와 무질서한 행동을 규제하였다.<sup>6)</sup> 이러한 통제와는 달리 왜구의 진압한 자, 피로·표류인 송환에 협력한 자 그리고 외교상의 공로자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授圖書制度와 授職制度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왜인통제책의 실시는 사행을 통한 일본 국내정세의 지식 확대가 그 배경이 되었다. 특히 조선정부는 대일사행을 통해서 얻은 정보 예를 들면 일본의 국내정세, 막부장군과 지방호족과의 세력관계, 일본내의 해적의 분포<sup>7)</sup> 등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대일외교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결국 조선정부가 왜인통제책을 실시할 수 있었던 배경은 ①통교자의 증가에 따른 치안·경제상의 부담과 ②대마도정벌 이후 왜구에 대한 자신감, ③일본의 국내정세에 대한 지식의 확대 등이었다고 할 수 있다.

6) 통교왜인에 대한 접대규정은 성종 2년(1471)에 편찬된 《해동제국기》 朝聘應接紀에 집대성되어 있다.

7) 세종 11년(1429)에 통신사 朴瑞生이 사행을 마치고 귀환하여 올린 啓에는 對馬에서 兵庫에 이르기까지 倭賊의 분포와 支配系統을 분석하고, 室町幕府 將軍과의 修好는 왜구를 금지시키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왜구를 통제할 능력이 있는 서일본지방의 제후들과 직접 교섭하여 왜구를 통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지적하고 있다.(《세종실록》 권46, 11년 12월 을해)

### III. 倭人統制策의 내용

#### 1. 書契에 의한 통제

서계는 조선의 禮曹와 일본의 통교자가 주고받았던 일종의 외교문서이었다. 따라서 조선에 오는 통교왜인은 반드시 書契를 지참하여야 했다. 서계에는 통교자의 관직 및 성명, 도항인원, 도항목적 등과 조선국왕에게 진상하는 물품을 기록한 별록 그리고 도서가 찍혀있어야 했다. 그러나 서계는 對馬島征伐 이후부터는 조선에 도항하는 왜인의 통제수단으로도 이용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對馬島主의 書契制’로 대마도로부터 도항하는 모든 통교자는 도주가 친히 서명한 서계를 가지고 와야만 접대를 받고 무역을 행할 수 있었다.<sup>8)</sup> 이는 태종 14년(1414)에 대마도주가 조일외교의 중간세력으로 등장한 이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었다.<sup>9)</sup> 그 후 조선에서는 서계에 의한 통제를 다른 지방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구주지방의 통교자도 九州節度使의 서계를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sup>10)</sup>

이같이 조선정부가 對馬島主나 九州節度使에게 도서를 사급하면서 그들 관하인의 통교를 제한하려 하였던 배경은 대마도의 지리적 위치와 구주절도사의 지배력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대마도는 지리적으로 조선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한 섬으로 조선에 도항하는 왜인이 거쳐야만 하는 곳이었으며, 또한 고려말부터 왜구의 소굴로 인식되고 있었다. 한편 九州節度使는 일본 西國에서 足利政權의 세력을 대표하는 자로, 源了俊(今川貞世) · 源道鎮(涉川滿賴) · 源義俊 등이 고려말 조선초에 통교하면서 왜구의 금압과 피로인의 송환에 적극 협력하였다.<sup>11)</sup> 이에 조선에서는 대마도주와 구주절도사에게 도서를 사급하고 이를 통해 그들 관하의 통교자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서계에 의한 통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 같다. 그 이유는 대마도주의 정치적 불안정과 九州節度使의 지배력 약화, 그리고

8) 《세종실록》 권7, 2년 윤정월 임진

9) 《태종실록》 권28, 14년 8월 정미

10) 《세종실록》 권8, 2년 7월 임신

11) 源了俊은 태조 3년(1394)과 4년에 각각 659명, 570여명의 피로인을 송환하였으며, 源道鎮은 태종 6년에 사신을 파견하여 왜구의 금압에 적극 협력할 뜻을 전하고 아울러 피로인을 송환하였던 것이다.(《태조실록》 권6, 3년 7월 경술, 권8, 4년 7월 신축.《태종실록》 권11, 6년 2월 무자)

조선정부의 불철저한 통제책 때문이었다.<sup>12)</sup> 따라서 조선에서는 서계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문인제도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 2. 圖書에 의한 통제

圖書는 조선국왕이 일본의 지방호족이나 통교상의 공로자에게 지급한 일종의 私印으로, 통교자가 내조할 때에 가지고 오는 書契에 찍어 통교상의 증명으로 삼았던 것이다. 특히 조선정부로부터 도서를 사급받은 자를 受圖書人이라 하는데, 이들은 조선에 도항할 수 있는 통교권을 인정받았다.

기록상 처음으로 도서를 구청하여 사급받은 왜인은 세종 즉위년(1418) 11월에 西海路 美作太守 淨存이다.<sup>13)</sup> 그 이듬해인 세종 원년(1419)에 關西路 筑前州 石城府管事 平萬京이 통교상의 증명으로 삼기 위해 '萬景'의 도서를 요청하여 사급받았으며,<sup>14)</sup> 도서가 통교상의 증명서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세종초에 이르러서는 도서가 회유책의 일환으로 사급되기 시작하였으며, 사급 범위도 대마도나 일기지방의 호족에게 까지 확대되었다. 그 결과 도서는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통교인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그리하여 대마도정벌을 계기로 해서 대마도를 경상도의 속주로 삼고 도주에게 '宗氏都都熊瓦'라 새긴 도서를 사급하여 그 지방의 통교자는 도주가 친히 서명한 서계를 지참하도록 하였던 것이다.<sup>15)</sup>

대마도주는 도서를 이용하여 조선과의 통교에 있어서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고 나아가 도내에서의 정치적인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즉 세종 16년(1434)에 對馬州太守 宗貞盛은 사신을 보내 서계에 찍는 도서의 위치를 달리하여 도주 자신의 청인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宗貞盛) 위에, 그 이외에는 직함(對馬州太守) 위에 도서를 찍어 보낼 것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접대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다.<sup>16)</sup> 이것은 후에 도항의 목적에 따라 서계에 찍은 도서의 수를 달리하여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三著圖書, 그 다음은 二著圖書, 그리고 긴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一著圖書로 나누어서 구분하는 밀약으로 발전하였다.<sup>17)</sup>

12) 한문종, 앞 논문(1996), 66

13) 《세종실록》 권2, 즉위년 11월 을해

14) 《세종실록》 권4, 원년 6월 갑술

15) 《세종실록》 권7, 2년 윤정월 임진

16) 《세종실록》 권64, 16년 4월 무신

17) 《세종실록》 권86, 21년 9월 갑술. 《단종실록》 권2, 즉위년 7월 병오.

한편, 도서는 女眞人에게 사급되었는데, 왜인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통교상의 증명으로 사용되었다.<sup>18)</sup>

### 3. 文引에 의한 통제

#### 1) 行狀 · 路引 · 文引의 源流

조선초기의 法典인 《大明律直解》와 《經國大典》<sup>19)</sup>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종합해보면 行狀 · 路引 · 文引은 같은 의미로 혼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들은 국경의 요새나 나루터(關津)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경계적 목적과 상인들의 징세와 통제를 위한 군사적 목적, 조선에 도항하는 왜인들에 대한 통제하기 위한 외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행장 · 노인 · 문인의 적용 대상은 양인으로부터 상인 · 상선 · 才人 · 禾尺 · 水陸軍丁 · 鮑作人 · 군인 · 승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였다. 그리고 이의 발급은 戸曹와 兵曹 · 禮曹 등 六曹를 비롯해서 서울의 경우에는 漢城府와 留後司가, 외방의 경우에는 都觀察使 · 都巡問使 · 守令 · 萬戶 등의 지방 관이 담당하였다.<sup>20)</sup>

한편, 행장 · 노인 · 문인은 三浦 恒居倭人과 항왜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즉 삼포항 거래인 중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로 삼는 釣魚倭人과 商人은 差使員이나 邊將의 行狀 ·

---

中村榮孝는 三著圖書를 소지한 자는 도주 자신이 과견한 사송선으로, 二著이하는 도내 각처의 사송선으로, 그리고 一著圖書는 주로 商賈등이 청탁해서 과견한 것으로 추측하였다.(中村榮孝, 1965, <日鮮通交の統制と書契および文引> 『日鮮關係史的研究』上, 吉川弘文館, 東京, 456)

18) 《세종실록》 권102, 25년 10월 갑진. 《세종실록》 권113, 28년 7월 무자.

여진인에 사급하였던 도서는 왜인의 그것에 비하여 사급 범위와 성격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여진의 경우 주로 추장에게 사급하였으며, 그 성격도 관하 여진인의 상경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반면에 왜인의 경우는 사급 범위가 九州節度使 · 對馬島主 등 지방의 호족뿐만이 아니라 使送倭人이나 商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였으며, 그 성격도 초기에는 통교상의 권한을 인정해주는 회유책의 일환이었으나 후에는 점차 통교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한문종, 앞 논문(1996), 116

19) 行狀 · 路引 · 文引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사료에 기록되어 있다. 《大明律直解》 권15, 兵律 關津 私越冒度關津條. 권15, 兵律 關津 許冒給路引條. 권10, 戶律 市廛 私充牙行埠頭條. 《經國大典》 禮典 待使客條. 兵典 路引條

20) 한문종, 앞 논문(1996), 66-70

路引을 소지하도록 하고, 삼포 항거왜인이 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노인도 없이 關限을 넘어서 다른 고을에 가서 장사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였다.<sup>21)</sup> 또한 降倭의 경우에도 노인을 몰래 받아서 사사로이 바다에 나아가 장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sup>22)</sup>

行狀이 통교왜인에게 처음으로 적용된 것은 태종 7년(1407)으로, 흥리왜선이 여러 포구에 정박하여 병선의 허실을 탐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박장소를 釜山浦와 乃而浦 2포로 제한하였으며, 이후 흥리왜선은 각 섬의 통치자(渠首)가 발행한 행장을 가지고 와서 都萬戶가 있는 곳에 정박하도록 하였다.<sup>23)</sup> 그때 흥리왜선에 행장을 발급하는 각 섬의 통치자는 아마 대마도를 비롯하여 一岐, 九州의 지방세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24)</sup>

이와 같이 行狀 · 路引 · 文引은 삼포항거왜인과 항왜에 적용되었으며, 후에는 점차 조선에 도항하는 통교왜인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는 또한 북방의 여진인에도 적용되었다.<sup>25)</sup> 그리하여 行狀 · 路引 · 文引은 조선에 도항하는 倭人과 野人을 통제하기 외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조일관계에서 行狀 · 路引 · 文引은 같은 의미로 혼용되었으며, 시기적으로는 태종대과 세종초에는 행장이, 세종 16년부터는 문인이 주로 사용되었다.

## 2) 文引制度의 정약

문인제도는 일본으로부터 도항하는 통교자는 대마도주의 문인을 받아와야만 접대를 허락한다는 것으로, 세종 20년(1438)에 李藝와 대마도주 宗貞盛이 정약하였다. 문인 이전의 단계인 路引은 원래 흥리왜인에게 사용되었으며, 세종 8년(1426) 종정성의 요청에 의해서 왜인의 도항증명서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대마도주는 일본 각지로부터 조선에 도항하는 興利船과 使送船을 통제하기 위하여 자신의 路引을 휴대하도록 해 줄 것을 조선에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對馬島主 文引制度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대마도주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는지의 여부와 언제 行狀이 文引으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다.

대마도주의 문인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세종 15년(1433)에 宗貞盛에게 해물 채취

21) 《세종실록》 권48, 12년 4월 신사. 《성종실록》 권77, 8년 윤2월 병인. 《성종실록》 권10, 2년 5월 병자

22) 《태종실록》 권26, 13년 7월 을사

23) 《태종실록》 권14, 7년 7월 무인

24) 《태종실록》 권17, 9년 3월 기미

25) 《문종실록》 권9, 원년 9월 갑술

선을 약탈해간 범인을 색출하여 줄 것을 요청한 예조의 서계이다.<sup>26)</sup> 그 서계에 의하면, 세종 15년경에는 대마도로부터 조선에 오는 배는 行狀이나 路引 대신에 반드시 도주의 문인을 가지고 왕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세종 17년에 宗貞盛이 사신을 보내 宗彥七(盛國)·宗茂直 등 受圖書人도 도주의 문인을 소지하지 않고 왕래하면 접대해주지 말도록 요청하였다.<sup>27)</sup> 결국 종정성은 문인제도를 도내의 수도서왜인까지 확대 적용하여 그들을 자기의 통제하에 두려고 하였다.

한편 조선에서는 세종 18년에 使送倭人이 도주의 서계와 문인을 위조해서 오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文引에 使送船의 크기와 각 선의 正官, 格倭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인원수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sup>28)</sup>

그 후 세종 20년(1438)에 왜사의 통제를 요청하기 위해 敬差官 李藝를 대마도에 파견하였는데, 그때 대마도주와 문인제도를 定約하기에 이르렀다. 즉 대마도의 宗氏와 早田氏는 물론 一岐의 志佐·佐志殿, 九州의 田平殿, 大內殿·薩摩州·石見州 등 여러 지방의 使送人도 대마도주의 문인을 가지고 와야만 접대를 허락한다는 것이다.<sup>29)</sup> 이는 세종 17년 대마도내의 受圖書倭人에게까지 적용하였던 문인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志佐·佐志·田平殿 등 壱岐·松浦 등 구주지방의 호족에게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일본의 모든 통교자를 도주의 통제하에 두려고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조선에서는 대마도주에게 문인발행권을 주고 도주로 하여금 일본각지로부터 오는 통교자를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반면에 대마도주는 문인제도를 이용하여 각처의 사신들을 통제하고 문인발행에 대한 수수료인 吹噓(吹舉)錢<sup>30)</sup>을 받음으로써 대마도내에서의 정치·경제적 지배권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문인제도는 조선 정부과 대마도주의 이해가 상응하였기 때문에 이후 조선의 주요한 왜인통제책의 하나가 되었다.

조선에서 대마도주에게 문인발행권을 준 이유는 대마도가 조선과 일본의 중간지역에 위치하면서 간사한 무리를 단속하는 남쪽 울타리(藩屏)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sup>31)</sup> 따라서 조선에서는 대마도주가 왜구의 재발을

26) 《세종실록》 권60, 15년 6월 경자

27) 《세종실록》 권69, 17년 9월 정축

28) 《세종실록》 권73, 18년 윤6월 신묘

29) 《세종실록》 권82, 20년 9월 기해

30) 대마도주는 小船越의 梅林寺住持 鐵歡으로 하여금 문인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는데,(《朝鮮通交大紀》《宗氏世系私記》) 대마도경차관 元孝然의 복명에 의하면 도주가 路引을 발급해주고 거두어 들이는 세금인 路引稅는 적게는 5·60필부터 많게는 4·5백필이나 되었다고 한다.(《단종실록》 권14, 3년 4월 임오)

31) 이러한 사실은 성종 7년 1월에 對馬州 宣慰官 田養民이 가지고 간 서계(《성종실록》 권

방지하고 도내의 정치, 경제적 지배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에게 文引發行權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조선이 지방에 파견하였던 對地方官인 敬差官·體察使·宣慰使 등을 對馬島에 파견하였던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4. 癸亥約條와 歲遣船의 제한

##### 1) 癸亥約條의 정약

문인제도는 대마도주를 통해 통교왜인을 통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반면 계약약조는 대마도주의 통교를 제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해약조의 주 내용은 대마도주의 세견선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세견선은 일본의 통교자가 1년 동안에 파견할 수 있는 사송선의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중국이 外夷에 대해서 조공의 회수를 제한하고 무역선의 내조시기 및 선수 등을 제한한 것과 유사한 것이다.<sup>32)</sup>

세견선 정약은 이미 고려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즉 고려 원종 4년(1263) 4월 洪淳와 郭王府를 일본에 파견하여 해적의 금암을 요청하였는데, 그 첨문에 의하면 조선시대의 세견선과 유사한 進奉船을 매년 한차례에 2척을 파견하고 있었다.<sup>33)</sup> 기록상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세견선을 정약한 것은 세종 6년(1424)에 九州節度使 源義俊이며,<sup>34)</sup> 그 후 세종 22년(1440)에는 安藝州의 美作太守 持平과 세견선을 정약하였다.<sup>35)</sup>

대마도주는 세종 25년(1443)에 맺은 계해약조에 의해서 세견선을 정약하였다. 계해약조의 체결시기와 과정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다만 체결 당시의 정황과 《조선왕조실록》 및 신숙주의 「줄기」, 일본측의 기록인 《宗氏世系私記》 《朝鮮通交大紀》 등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癸亥約條은 세종 25년 8-10월경에 대마도에 파견되었던 체찰사 李藝가 주도하여 체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신숙주는 대마도주를 설득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하는데 일 助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36)</sup>

7, 1년 9월 병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2) 中村榮孝, 1969, <歲遣船定約の成立> 『日鮮關係史の研究』下(吉川弘文館, 동경) 10

33) 『고려사』 세가 25, 원종 4년 4월 갑인

34) 『세종실록』 권26, 6년 12월 무오

35) 『해동제국기』 일본국기 안예주 持平

36) 한문종, 앞 논문(1996) 74-77

## 2) 歲遣船의 제한

계해약조는 대마도주의 세견선 정약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계해약조로 대표되는 세견선의 정약은 이후 일본의 모든 통교자들에게 적용되었다. 그리하여 세종 26년과 27년에는 宗貞盛의 동생인 宗彥七盛國(7선)을 비롯하여 宗盛家·宗盛弘등 도주의 일족과 세견선을 정약하였으며, 비전주의 源吉, 석견주의 藤原和兼과도 세견선을 정약하였다.<sup>37)</sup> 이들이 모두 수도서인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세견선의 정약이 독자적인 대조선 통교권을 가지고 있었던 수도서왜인까지 확대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성종 8년에는 모든 수도서왜인도 세견선을 정약해야만 조선에 도항하여 접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견선의 정약이 사송선의 통제원칙으로 되었다.<sup>38)</sup> 그 후 세견선을 정약하지 않은 자가 도서와 서계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접대를 거부하는 등 불법 도항자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였다.

## IV. 통교 위반자의 유형 및 처리

## 1. 서계를 위·변조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자

왜인통제책을 위반한 유형의 하나는 서계를 위조 내지는 변조해서 도항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조선왕조실록』에서 많이 발견된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개 들어보면, 먼저 세종 10년 7월에 종정성의 사자 宗金이 가지고 온 서계는 別幅에 圖書가 없고 글자의 자획도 서계와 차이가 있는 위조된 것이었다.<sup>39)</sup> 또한 세종 21년 10월에 대마도 宗貞盛의 상관인 沙毛多老, 船主 延時老 등이 서계를 고쳐서(塗改) 장사하러 왔다고 칭하다가 발각되어 구류되기도 하였다.<sup>40)</sup> 그리고 동년 11월에 왜인 羅沙也文이 宗貞盛의 偽造書契, 孔古老는 종무직의 서계를 고쳐서(塗改) 도항하였다.<sup>41)</sup> 또한 성종 4년 6월에 築前州 貞成의 사자가 도항하였는데, 서계에 州守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사자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접대를 하지 않고 송환하기도 하였다.<sup>42)</sup>

37) 『세종실록』 권105, 26년 윤7월 기해. 권106, 26년 11월 병자. 권107, 27년 2월 임자

38) 『성종실록』 권84, 8년 9월 무진

39) 『세종실록』 권41, 10년 7월 갑인

40) 『세종실록』 권87, 21년 10월 계미

41) 『세종실록』 권87, 21년 11월 기미. 권87, 21년 11월 병인

이상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왜인들이 위조 서계를 가지고 도항하여 장사를 하려 왔다고 사칭하거나 또는 물건을 현상하는 자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위조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날 경우에는 그들을 구류하거나 현상하는 물건을 거절하고 되돌려 보냈다. 그렇지만 위조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접대여부를 결정하였다. 예를 들면, 세종 13년 2월에 일본국왕사 舍溫 등이 가지고 온 서계가 일본국왕의 글이 아니고 예의가 없었기 때문에 위사라고 의심하였다. 이에 대해 우의정 맹사성은 回禮만 하고回答은 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고, 공조판서 정초는 일본과의 불화를 고려하여 회사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왕은 저들이 무례할지라도 우리의 도리를 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3)</sup> 결국 조선에서는 이들에게 회례와 회답을 하였다. 이로서 보면 일본국왕사의 경우에는 다른 사신과는 달리 위사라고 의심하였을 지라도 명분론적인 입장에서 사절을 접대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조 3년 9월에는 일본국 摠管府 源勝元의 사자가 가지고 온 서계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하였지만 끝내 이를 거론하지 않고 접대해주기도 하였다.<sup>44)</sup>

세종 30년 6월에는 唐人 柴江이 서계없이 일본국왕사를 따라서 도항하자 그가 통제책을 위반하였지만 국왕사의 정·부사의 從者의 예에 따라 접대해주기도 하였다.<sup>45)</sup>

한편, 조선에 도항하는 사절이 가지고 오는 서계에는 도항하는 목적, 현상하는 물품을 기록한 별록 그리고 도서가 찍혀 있어야만 했다. 그런데 사절 중에는 서계에 기록되지 않은 물품을 사적으로 현상하는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면 세종 5년 11월에 源義俊과 一岐州 源重의 사송인이 서계없이 石硫黃 950근을 사적으로 가지고 와서 현상하려 하였으며, 세종 10년 7월에 종정성의 사자로 온 宗金 역시 서계에 기록되지 않은 물품을 현상하려고 하였다.<sup>46)</sup> 이 같이 서계에 기록되지 않은 물품을 현상하는 경우에 조선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였다. 또한 별록에 도서가 없는 경우에도 진현을 거절하였다.<sup>47)</sup> 세종 16년에는 왜인 宗彥次郎이 쌀의 사급을 요청하였는

42) 《성종실록》 권31, 4년 6월 기축

43) 《세종실록》 권51, 13년 2월 병오, 13년 3월 경오

토론에서 지적한 사료 중에서 주)43, 50, 51, 60, 80, 81은 伊藤幸司<僞使の時代>(村井科研福岡 심포지움 發表要旨, 2002)를 참조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2004년 3월 14일(제10차 한일 학동회의)의 토론회에 제시한 자료인 한문종「조선전기 통교왜인 일람표(시대별, 지역별)」(전북대 박사논문 참고자료, 1996)와 학위논문에서 인용한 사료를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44) 《세종실록》 권9, 3년 9월 신미

45) 《세종실록》 권120, 30년 6월 을해

46) 《세종실록》 권22, 5년 11월 갑오. 《세종실록》 권41, 10년 7월 갑인

데, 서계에 쌀의 구청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하였다.<sup>48)</sup>

이같이 서계를 위조하여 불법적으로 도항하는 사절이 매우 많았던 것 같다. 이는 한달 동안에 왜인이 수천명이나 도항하자 세종 21년 5월에 僉知中樞院事 李藝가 대마도주에게 불법 도항자의 금지를 요청하자고 사실이나,<sup>49)</sup> 같은 해 10월에 예조에서 대마도주 宗貞盛에게 보내는 서계에서 통교 위반자가 많아서 1년동안의 왜인접대비 용이 무려 10만석에 달하여 연해의 국고가 고갈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50)</sup> 조선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처를 취하고 있다. 먼저 어염을 판매하기 위해서 도항하는 왜인은 문인만 소지하도록 하고 과해량도 폐지하였다. 그리고 긴급하지 않은 일로 도항하는 사절의 상경을 금지하였다. 또한 대마도의 사신은 과해량을 반감하여 5일분을 지급하며, 宗彥七 宗茂直 등의 수도서인도 도주의 문인 받아와야만 접대를 허락한다는 사실을 대마도주에게 통보하였다.

## 2. 도서를 위·변조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자

이러한 유형의 위반자는 도서를 偽造 偽著하여 온 자, 사도서를 찍어서 온 자 그리고 이미 죽은 자의 도서를 가지고 온 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도서를 위조하여 온 사례를 보면, 세종 21년 10월에 宗貞盛의 사자 望古多羅가 圖書를 偽著하여 왔으며, 동년 11월에 왜인 多郎古羅와 宗茂가 宗貞盛의 도서를 위조하여 도항하였다.<sup>51)</sup> 조선에서는 도서를 偽造 假著하여 온 위반자에 대해서 肅拜와 饋享을 금지하게 하고 과해糧을 감하여 주고 돌려보냈다.

위반자 중에는 조선에서 사급한 도서를 사용하지 않고 私圖書를 찍어서 도항한 자들도 있었다. 그 중 菊池爲邦은 1468년에 사급받은 도서를 사용하지 않고 사도서를 사용하여 통교하였으며, 能登守 源德의 서계에 찍힌 도서는 이전의 도서와는 다른 것이었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위반자들은 모두 중간에 속이는 자들의 소행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마도주에게 문인발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sup>52)</sup> 또한 성종 4년

47) 《세종실록》 권44, 11년 4월 정축

48) 《세종실록》 권64, 16년 4월 임신

49) 《세종실록》 권85, 21년 5월 무오

50) 《세종실록》 권87, 21년 10월 병신

51) 《세종실록》 권87, 21년 10월 갑신. 권87, 21년 11월 병인

6월에는 肥前州 源德의 사자 江間都老는 전에 사급한 도서를 찍지 않고 사도서를 찍은 서계를 가지고 도항하였다. 이에 대해 江間都老는 하사받은 도서가 경인년 (1470)에 화재로 불타 없어졌기 때문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확인 결과 그의 말은 거짓임이 판명되어 접대하지 않고 송환하였다.<sup>53)</sup>

한편, 이미 죽은 자의 도서를 가지고 통교한 대표적인 사례는 呼子 源高와 源義의 사절이다. 呼子 源高는 수도서인으로 1444년부터 20여년간 통교하다가 1464년에 죽었는데, 6년 후인 성종 원년에 源高의 서계를 가진 사절이 도항하였다.<sup>54)</sup> 이 같이 도서를 사급받은 지 오래된 자의 통교가 계속되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중종 4년(1509)에는 敬差官 尹殷輔를 대마도에 보내 遠地에 거주하는 수도서인 중에는 이미 죽은 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세견선이 끊이지 않는 것은 중간에서 간사한 자들이 사칭하기 때문이라 지적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受圖書 후 50년이 경과한 자는 접대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므로 대마도주는 도서를 잘 살펴서 문인을 발급해주도록 요구하였다.<sup>55)</sup>

이러한 조선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종 4년 7월에 源義의 사자 仇羅沙也文이 죽은 지 30년이나 지난 수도서인 원의의 도서를 가지고 통교하다가 발각되었다.<sup>56)</sup> 이에 중종은 대신들에게 사절의 접대 여부를 의논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대신들은 너그러이 포용하여 접대를 해야한다는 주장과 절대 접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그리고 접대는 허락하지 말고 과해량을 주어 먼 곳에서 온 사람을 회유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등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중종은 접대를 해주지 말고 다만 돌아가는 도중에 사절들이 끊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명하였다. 그리고는 이후부터는 도서를 받은 지 오랜 기간이 경과한 자의 사인이 도항하면 모두 생사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sup>57)</sup> 이같이 源義의 사건을 계기로 도서를 사급받은 지 오래 된 수도서왜인의 통교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났다. 그리하여 조선에서는 受圖書·受職 후 50년 이상 된 자의 통교를 금지시키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52) 《성종실록》 권7, 1년 9월 병자

53) 《성종실록》 권31, 4년 6월 기축

54) 《성종실록》 권7, 1년 9월 병자

源高는 수도서왜인으로 1444년부터 1464년까지 20여년간 통교하다가 1464년에 죽었다.

후에 그의 아들 源義가 도서를 개급받았다. 한문종, 앞 논문(1996), 119

55) 《중종실록》 권8, 4년 3월 무오, 4월 임술, 계유, 권10, 5년 2월 기축

56) 《중종실록》 권8, 4년 7월 병신

肥前州 平戶寓鎭 肥州太守 源義는 少弼弘의 제로 平戶에 거주하여 병자년(1456, 세조2)

에 도서를 사급받고 세견선 1척을 정약하였다.(《해동제국기》 일본국기 비전주 源義)

57) 《중종실록》 권8, 4년 7월 정유

### 3. 문인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위조해서 도항한 자

세종 20년 문인제도의 정약으로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들어오는 왜인들은 대마도주의 문인을 받아서 도항하여야만 접대를 허락 받았다. 그러나 문인제도를 시행하는 초기에는 이를 위반하면서 도항하는 자들이 있었다. 세종 21년 윤 2월에 宗茂直의 사인이 종정성의 文引을 소지하지 않고 도항하자, 좌찬성 신개 등은 이미 종정성과 문인제도를 정약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접대하면 다른 사인도 문인을 받지 않고 오는 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접대하지 말고 돌려보내자고 주장하였다. 그에 대해 영의정 황희 등은 그가 出羽守 宗茂秀의 아우이고 우리나라에 원한이 있어서 접대를 해주지 않으면 더욱 원망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임시방편으로 상경시켜 접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종무직의 사자는 상경하여 접대를 받았다.<sup>58)</sup> 또한 세종 21년 6월에는 宗彥七·宗貞國·宗茂直 등의 사인이 도주의 文引을 소지하지 않고 도항하였다. 의정부에서는 그들이 비록 문인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회답을 기다려서 상경시키는 것은 浦所에 오래 머무르는 폐단이 있으므로 회답을 기다리지 말고 상경시키자고 건의하였다.<sup>59)</sup> 이러한 사례에서 보면, 문인제도가 정약된 초기에는 문인을 소지하지 않고 도항한 자들을 접대를 금지하고 포소에서 되돌려보내지 않고 예조에 보고하여 그들의 상경 및 접대여부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고하고 회답받는 기간이 오래 소요되었기 때문에 회답을 기다리지 말고 상경시키도록 하였던 것이다.

한편, 통교위반자 중에는 거짓으로 이름을 꾸며(冒名) 문인을 받아 온 자들도 있었다. 세종 24년 10월에 온 宗盛家の 사인 沙應古, 時羅沙也文은 지난 1월 宗茂直의 사인 馬豆老, 吾羅沙也文이 이름을 바꾸어서 도항하였고, 도주가 보낸 時羅三甫羅도 이름을 거짓으로 꾸며 도항하다가 발각되었다.<sup>60)</sup> 조선에서는 이들의 처리를 대마도주와 의논하여 결정하려 하였다. 이같이 통교위반자의 처리를 대마도주와 의논하려 한 이유는 그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대마도주로 하여금 문인발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통교 위반자 중에는 이미 기한이 지난 노인이나 문인을 가지고 온 자들도 있었다. 세종 7년 10월에 對馬島 興利倭船主 所溫田知가 이미 기한이 지난 노인을 가지고 도항하자 노인을 수거하여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sup>61)</sup> 또한 중종 28년 7

58) 《세종실록》 권84, 21년 윤2월 계사

59) 《세종실록》 권85, 21년 6월 계미

60) 《세종실록》 권98, 24년 10월 임자

월에도 小貳殿의 사인(藤朝秋)이 기한이 지난 문인을 가지고 도항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미 肅拜와 宴享 접대를 행한 이후에야 위반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후에 다시 위조해서 도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절에게 조선에서 통교 위반자로 의심하고 있다는 알려주는데 그치고 있다.<sup>62)</sup>

이같이 도서 서계를 위조하여 오는 자들이 날로 증가하자 그 대책의 하나로 조선에서는 세종 21년 4월 대마도에 경차관을 대마도주에게 문인의 발행에 신증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서 도항한 자들의 세계 및 인원수 등을 기록한 명부를 보내도록 요청하였다.<sup>63)</sup>

#### 4. 세견선 미정약자 및 수외 통교자

세견선 미정약자 및 수외 통교자의 도항 사례는 성종대에 많이 나타났다. 먼저 성종 1년 9월 宗彥九郎貞秀, 多多良教之, 五島宇久守 源勝의 사절은 수외 도항자였으며, 高賴郡守 武磨, 肥前州 小弼 源弘, 薩摩州 盛高의 사절은 세견선 미정약자로, 이미 기한이 지난 서계를 가지고 온 자들이다.<sup>64)</sup> 조선에서는 이들을 접대를 하지 않고 과해량만 징급하여 돌려보냈다. 이러한 수외 통교자 및 미정약자의 통교는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그 수법도 다양해져 정약한 수를 한 해에 중첩해서 파견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세견1선 정약자인 肥前州 源胤과 筑前州 氏鄉, 세견1·2선 정약자인 肥前州 小弼弘, 薩摩州 盛久는 1473년 한해에 중첩해서 세견선을 파견하였다.<sup>65)</sup>

이같이 정약한 세견선의 수를 지키지 않고 중첩해서 파견하는 사례는 이후에도 계속 나타났다. 大內殿 教之는 세견선 1선의 정약자임에도 불구하고 1472년 1473년에 세견선을 중첩되게 보내와 결국 매년 2척씩을 파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對馬島主는 1473년에 세견 25선을 중첩되게 파견하기도 하였다.<sup>66)</sup> 또한 1474년에는 宗茂勝, 宗貞秀, 宗成俊, 秦成幸, 教之, 藤熙久, 家次, 爲幸, 忠吉, 源吉이 보낸 사자가 중첩하여 왔고, 그 이듬해에는 源實次, 持平, 藤熙久, 忠吉, 宗成俊, 宗茂世의 사자가 중첩하여 도항하였다.<sup>67)</sup> 조선에서는 이러한 위반자를 접대해주지 않고 과해량만 징급하여 돌려보

61) 《세종실록》 권30, 7년 10월 갑술

62) 《중종실록》 권75, 28년 7월 을묘

63) 《세종실록》 권85, 21년 4월 갑진

64) 《성종실록》 권7, 1년 9월 병자

65) 《성종실록》 권31, 4년 6월 기축

66) 《성종실록》 권49, 5년 11월 신유

냈다. 그리고는 대마도에 선위사 등을 파견하여 이들의 위반사실을 대마도주에게 통보하고 문인발행을 보다 신중하게 하도록 조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세견선 미정약자 및 수외 통교자의 도항 사례는 성종 초에 많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應仁의 난으로 일본의 국내정세가 불안정하였던 점과 대마도에서 宗貞國이 도주직을 襲位하여 문인발급에 의한 왜인들의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sup>68)</sup> 게다가 세조 말부터 觀音現像이나 舍利分身·雨花의 출현을 축하하러 오는 사절과 대마도주가 기근 등을 이유로 접대를 요청한 사절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었다.<sup>69)</sup> 이러한 요인 때문에 세조 말부터 성종초에 세견선 미정약자와 수외 사송선이 많이 도항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요인의 하나는 수외 통교자나 세견선 미정약자의 통교가 증가하자 성종이 위반 사실을 대마도주에게 통보하여 문인발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書契나 使節을 파견하였기 때문에, 통교 위반자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조선에서는 성종 8년(1477)에 수도서인도 세견선을 정약하여야만 조선에 도항하여 접대를 허락받을 수 있도록 세견선 정약을 제도화하였다. 그리고는 성종 14년에 세견선 미정약자인 原忠과 赤間關太守 藤原貞重의 사신이 도항하자 접대를 거부는 물론 과해량도 주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등 불법 도항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sup>70)</sup>

## 5. 처음 통교한 자 및 통교단절 후 다시 통교한 자

먼저 처음으로 통교한 자들은 주로 세종 15년과 16년에 나타났다. 이는 아마 통교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구나 왜인이 평화적인 통교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에서는 처음으로 통교한 자들을 그의 세력과 토지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접대를 해주었다. 즉 세종 15년에 처음으로 통교한 肥

67) 《성종실록》 권64, 7년 2월 병술

68) 中村榮孝, 앞 논문(1969), 41-42

69) 《해동제국기》에 의하면 觀音現像이나 舍利分身·雨花의 출현을 축하하러 오는 사신이 세조 13년(1467)과 14년에 무려 33건이나 되었으며, 應仁의 난이나 기타 기근 등을 이유로 대마도주가 접대를 요청한 경우가 세조 14년부터 예종 원년까지 무려 34건이나 되었다. 또한 壽蘭護送이라 칭하여 접대를 허락받은 사례도 세조 12년부터 성종 2년까지 13건이나 되었다. 한문종, 앞 논문(1996), 77-78.

70) 《성종실록》 권155, 14년 6월 계해. 권160, 14년 11월 계묘.

前州太守 源義의 사자에 대해 田平殿의 사위이고 영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사인과 같이 상경시켜 접대해주었다.<sup>71)</sup> 또한 세종 16년 宗彥次郎의 경우에도 그가 宗貞澄의 양자로 토지를 전해 받은 자라는 이유로 접대해주었다.<sup>72)</sup> 이같이 처음으로 통교한 자는 그의 族勢와 영토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접대해주었다. 그 반면에 처음으로 통교한 자라 할지라도 그의 세력이 미약하거나 영토가 없는 경우에는 접대를 하지 않고 되돌려보냈다. 이는 세종 16년에 도항한 博多人 道性과 대마도인 宗勘解由의 사례에서 통교에서 잘 나타난다.<sup>73)</sup> 조선에서는 이들이 평소 통교를 하지 않았고 또한 영지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진상과 서계를 받지 않고, 浦所에 머물며 가지고 온 물건만 매매하게 한 뒤에 돌려보냈던 것이다.

한편, 오랜 기간동안 통교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통교하는 자들이 1541년 정미약조 이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가 1548년(명종 3) 3월 도항한 畜山殿의 사절이다. 畜山殿은 成化 연간(1465-1487)인 1480년과 1485년에 통교한 이후 60여년동안 통교가 단절되었다가 1548년에야 다시 사신을 파견하였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전산전의 사절에 대한 접대여부를 의논하였는데, 사절의 진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도서를 조사하여 확실하면 접대를 허가해주도록 진현하고 있다.<sup>74)</sup> 또한 1553년(명종 8년) 11월에는 左武衛殿의 사신이 도항하였다. 좌무위전은 약 100년정도 통교가 단절되었다가 1552년에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당시 사절의 명칭을 春江에서 宜春으로 바꾸고 내왕한 날짜도 위조한 흔적이 많기 때문에 접대를 거절당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해에 다시 좌무위의 사신인 怡天西堂이 도항하자 그의 접대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 명종은 무위전의 사절이 도서를 받아 왔으며, 전에 위사를 파견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절하고 접대를 하지 않는 것은 멀리서 온 자를 후대하던 조종조의 뜻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牙符가 부합되면 접대해주도록 하였다.<sup>75)</sup>

이같이 오래 동안 통교가 단절되었던 자라 할지라도 이전에 통교한 전례가 명확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서계와 도서, 문인 등에 어떤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멀리서 온 자를 후대해야 한다는 명분론에 따라 접대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통교가 단절된 후 다시 통교하는 자들의 통교는 명종대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마도주가 삼포왜란 이후 폐지된 수직·수도서인의 접대를 부활해주도록 요청한 사

71) 《세종실록》 권62, 15년 12월 병자

72) 《세종실록》 권63, 16년 3월 임오

73) 《세종실록》 권63, 16년 1월 경자. 권64, 16년 5월 무인

74) 《명종실록》 권7, 3년 3월 계사

75) 《명종실록》 권15, 8년 11월 신미

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 6. 王命을 稱託해서 사절을 파견한 자

일본국왕이라고 할 수 있는 막부장군의 명을 칭탁해서 사절을 파견한 사례는 細川氏와 伊勢守正親을 들 수 있다. 특히 正親은 성종 원년 8월에 ‘日本國王懷守納政所伊勢守正親’이라 칭하면서 사자를 파견하여 부족한 軍資를 요청하였다.<sup>76)</sup> 조선에서는 이들의 서계에 도서가 없어 의심하기는 하였지만 일본국왕의 공사를 출납하는 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접대해주었다. 그러나 이들이 통교 위반자라는 사실은 성종 5년 日本國王使正球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다. 정구는 지난번의 細川氏와 伊勢씨의 통교는 王命을 假託하여 兵費를 요구한 것임을 밝히고, 이러한 위반자를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통신부의 사급을 요청하였다.<sup>77)</sup>

이와 같이 應仁의 亂으로 일본 국내정세가 혼란한 틈을 타서 일본국왕을 사칭한 위반자가 나타나기도 하였다.<sup>78)</sup>

## 7. 使節 또는 格軍을 稱託한 자

왜인통제책을 위반한 자 중에는 對馬島人이나 三浦恒居倭人이 사절 또는 格倭로稱託하는 사례도 있었다. 먼저 세종 21년 12월에 薺浦恒居倭人而羅餘文이 宗彥七의 사송인을 따라 왔다고 칭하다 발각되었다. 이에 대해 조선에서는 사절의 肅拜를 거부하고 接待해주시지 않았으며, 而羅餘文은 대마도로 강제 귀환시켰다.<sup>79)</sup> 이로서 보면 삼포항거왜인이 사인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숙배와 접대의 거부는 물론이고 삼포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일본으로 강제 송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왜인이 사인을 사칭하여 도항한 경우에는 죄를 묻지 않고 특별히 용서하여 돌려보내기도 하였다. 이는 세종 22년 5월에 三郎左衛門과 八郎左衛門이 몰래 다른 배를 타고 와서 使人을 사칭

76) 《성종실록》 권7, 1년 8월 기사. 8월 임신

77) 《성종실록》 권50, 5년 12월 병신

78) 이에 대해서는 橋本雄, 1997, <中世日朝關係における王城大臣使の偽使問題> 《史學雜誌》 106-2에 잘 정리되어 있다.

79) 《세종실록》 권87, 21년 12월 기묘

하다 발각되자 죄를 묻지 않고 되돌려 보냈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sup>80)</sup>

한편 대마도인이 過海糧을 받기 위하여 다른 곳의 상선에 붙어 格倭를 사칭하고 도항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 때문에 조선에서는 격왜의 수를 제한하기도 하였다.<sup>81)</sup> 이 같이 사절을 청탁한 자들의 도항 목적은 조선으로부터 양식이나 過海糧 등을 받아가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 8. 기타

그밖에도 통교 위반자 중에는 규정을 어기고 세견선의 크기를 바꾸어 타고 도항한 사례도 있었다. 즉 성종 4년 3월에 博多城 藤氏母의 사송 信沙伊文이 이미 정해진 약속을 어기고 사송선을 小船에서 大船으로 바꾸어 타고 오자 구약을 어겼다고 하여 접대를 하지 않고 송환하기도 하였다.<sup>82)</sup> 또한 본인이 직접 도항해야 하는 수직왜인이 사절을 보내는 사례도 있었으며,<sup>83)</sup> 고초도조어금약을 위반하고 병기를 소지하고 고기잡이를 한 왜인을 체포하여 대마도로 돌려보내기도 하였다.<sup>84)</sup>

## V. 맷음말

이상에서 조선전기 통교 위반자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왜인통체책의 실시 배경과 내용 그리고 통교위반자에 대한 유형 및 처리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이상에서 살펴 본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조선의 다양한 왜구대책으로 왜구의 침입은 감소하고 일본으로부터 도항하는 통교자는 증가하였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왜인을 통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마도정벌을 계기로 왜인통체책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조선에서는 書契, 圖書, 文引制度와 歲遣船의 정약 등 여러 가지 왜인통체책을 실시하였다. 이같이 조선정부가 왜인통체책을 실시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통교자의 증가에 따른 치안·경제상의 부담과

80) 《세종실록》 권89, 22년 5월 경신

81) 《세종실록》 권108, 27년 6월 신해

82) 《성종실록》 권31, 4년 6월 기축

83) 《성종실록》 권7, 원년 9월 병자

84) 《성종실록》 권49, 5년 11월 신유

대마도정벌 이후 왜구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일본의 국내정세에 대한 지식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왜인 통제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면서 도항하는 통교 위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통교 위반자의 유형을 보면, 먼저 서계·도서·문인과 관련하여서는 서계·도서·문인을 위·변조하거나 소지하지 않은 사례, 서계에 기록되지 않은 물건을 사적으로 진현한 사례, 사도서나 죽은 자의 도서를 사용한 사례, 기한이 지난 문인을 사용한 사례 등이 있었다. 그리고 수외 세견선이나 정약된 세견선을 중첩해서 보내는 사례, 세견선을 정약하지 않은 사례 등 세견선과 관련된 위반자도 많았다. 그 외에도 처음으로 통교하거나 통교가 단절된 후에 재통교한 사례, 일본 국왕의 명을 칭탁하거나 使節·格軍 등을 칭탁한 사례, 수직왜인이 사선을 과연한 사례와 고초도조어금약을 위반한 사례 등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왜인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조선의 왜인통제책을 위반하면서 도항하는 자들이 많았다. 이들 통교위반자에 대한 조선의 처리를 보면 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가지고 온 물품의 獻上을 금지하고 肅拜의 거부하였으며, 접대를 허가하지 않고 過海糧을 주어 되돌려보냈다. 그러나 통교 위반자의 위반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했기 때문에 조선에서 위반 사실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통교 위반자로 의심이 되더라도 그들을 되돌려보내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접대를 허용하였다. 심지어는 위반 사실이 거의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도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상경시켜 접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정부가 통교 위반자를 강력하게 단속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처리한 이유는 멀리서 온 사질을 박대할 수 없다는 명분론과 일본과의 불화 및 왜구의 재발 가능성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당시 조선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온 서계·도서·문인과 進上·回賜라는 외교의례에 충족된다면 통교 위반자의 진위 여부에 대해 크게 문제삼지 않았던 것 같다.

한편, 조선에서는 통교 위반자가 많이 나타나자 그에 대한 처리를 대마도주와 의논하거나 위반사실을 대마도주에게 통보하기도 하였다. 이는 통교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대마도주로 하여금 문인발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경고하려는 의도였다고 생각된다. 이같이 조선정부가 대마도주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교왜인을 제한하려는 방식은 한계가 있었다. 즉 조선에서는 대마도주에게 문인발행권을 주어 통교자를 통제하려 하였지만 대마도주가 제대로 문인을 발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러한 간접통제방식과 문인제도의 한계점이 통교 위반자를 증가시키는 배경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였거나 또 이후에 연구되어져야 할 과제를 정

리하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한다. 첫째는 통교자들이 포소에 도착한 이후부터 돌아갈 때까지 조선의 接待規定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조선에서 통교 위반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일외교에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연구가 행해져야 한다. 셋째는 통교 위반자뿐만 아니라 조선에 도향한 개개의 사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야만 통교 위반자의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통교위반자가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하는 사절의 경우에는 한 건도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유독 일본에서 조선에 파견하는 경우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조선시대 한일관계에서 통교 위반자가 차지하는 역할 및 의의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조선전기 통교 위반사례 일람표

	통교년월일	통교자	도항인	위반내용	처리 내용
1	세종 05 11 갑오(17)	源義俊 —岐州 源重	客人	서계없이 석유황 950 근 私의으로 진현	진현 거부
	세종 06 12 무오(17)	源義俊		한해에 20여차례 도항	세견선 2선 정약
3	세종 07 10 갑술(09)	對馬島 興利倭船主所溫 田知	본인	기한이 지난 路引을 소지	路引 수거하여 재사용 금지
4	세종 10 07 갑인(04)	對馬島 宗貞盛	宗金	서계에 進上物을 기록 하지 않고, 別幅에 圖 書도 없으며, 字劃도 書契과 다름	진현 거부
5	세종 11 04 정축(02)	對馬島 宗彥七盛國	치서	別幅에 圖書가 없음	진현 거부, 미두 각40석 사급
6	세종 13 03 경오(06)	日本國王使	舍溫, 而羅	통신서계가 국왕의 글 이 아니고, 예의가 없 다. 위조서계 가능성?	접대
7	세종 15 12 병자(27)	肥前州太守源義	사인	非通信人	館待京中(田平殿源 婿, 有土地人)
8	세종 16 01 경자(22)	博多居 道性	본인	非通信人	진현 · 서계 거절(非有土地人)
9	세종 16 03 임오(05)	宗彥次郎	본인	非通信人	依他接待(宗貞澄의 養子, 傳其土地者)
10	세종 16 04 임신(25)	宗彥次郎	사인	서계없이 米 구청	거절
11	세종 16 05 무인(02)	對馬州住 宗勘解由	사인	非通信人	포소에서 물건 매매후 送還(無土地者)
12	세종 21 윤2 계사(15)	對馬島 宗茂直	仇羅沙也門	宗貞盛의 文引 미소지	상경접대(宗大膳의 아우)
13	세종 21 06 계미(07)	對馬島 宗彥七盛國	多羅時羅76 인	宗貞盛의 文引 미소지	上京
		對馬島 宗茂直	皮古仇老 65		
			時知難酒毛 70인		
			表安時羅 65인		

150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2분과 편)

14	세종 21 10 계미(08)	對馬州 宗貞盛	상관인 沙毛多老, 船 主延時老	塗改書契 妄稱興利	구류하였으나 도주함
15	세종 21 10 갑신(09)	宗貞盛	상관인 望古多老	宗貞盛의 도서 위조	숙배·접대 거부, 과해량주어 송환
16	세종 21 11 기미(15)		羅沙也文	宗貞盛의 위조서계 소 지	진현 거부, 餉餉 불허
17	세종 21 11 병인(22)		多郎古羅, 宗茂	宗貞盛의 도서 위조	진현 거부, 접대 불허
18	세종 21 11 병인(22)		孔古老	宗茂直의 서계 위조	진현 거부, 접대 불허
19	세종 21 12 기묘(05)	宗彥七	상관인 賓前의 반인 而羅餘文	乃而浦 恒居倭人이 伴 人 사칭	숙배 거부, 접대불허, 본토 강제송환
20	세종 22 05 경신(19)		三郎左衛門, 八郎左衛門	양식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의 배를 타고 사 인을 사칭함	특별히 용서하여 송환
21	세종 24 10 임자(25)	宗盛家	沙應古 時羅沙也文	宗茂直 使送人(馬豆老, 吾羅沙也文)의 이름 위조 도항	대마도주에게 처리여부 논의
		宗貞盛	時羅三甫羅	이름 위조하여 도항	
22	세종 30 06 정해(21)		唐人 柴江	서계없이 일본국왕사 를 따라 옴	사절의 從者 예로 접대
23	세조 03 09 신미(21)	日本國 總官府 源勝元	사자 20인	위조 서계로 의심	확인하지 않음
24	성종 01 08 임신(27)	日本國王 懷守納政所 伊勢守 正親	사자 入道 등	왕명 칭탁하고 軍資 요청 서계에 도서가 없음	접대
25	성종 01	細川 · 伊勢	사자	일본국왕사 正球 등이 兩使는 왕명을 칭탁한 사절이라 주장(성종 5/12 병신)	象牙符 10개 사급
26	성종 01 09 병자(01)	菊池爲邦	사자	사도서 사용하여 통교	
27	성종 01 09 병자(01)	呼子 源高	사인	죽은 자의 서계를 가 지고 도항	접대 불허, 과해량 지급, 위반사실을 대마도주에게 통보
28	성종 01 09 병자(01)	能登守 源德		서계에 찍힌 도서가 전에 사급한 도서와 다름	

29	성종 01 09 병자(01)	中尾吾郎, 道安, 三甫郎大郎	宗像郡氏鄉	자신(수직왜인)이 직 접 도항하지 않고 사 인을 파견	
30	성종 01 09 병자(01)	宗彥九郎貞秀 多多良教之 五島宇久守 源勝		數外 사송인 파견	접대 불허, 과해량 지급, 위반사실을 대마도 주에게 통보
31	성종 01 09 병자(01)	高賴郡守 武磨 肥前州 小弼 源弘 薩摩州 盛高		세견선 미정약자, 오 래 전의 서계를 변조 해서 내조	
32	성종 04 06 기축(30)	博多城 藤氏母	信沙也文	小船을 大船으로 바꾸 어 타고 옴	
33	성종 04 06 기축(30)	筑前州 貞成	大要沙也文	서계에 州守의 성명 미기록 등 서계위조 의심	
34	성종 04 06 기축(30)	肥前州 元胤	仇羅沙也文	1473년의 사송선을 중 첩하여 파견구약을 어 김	접대불허 송환, 위반사실을 대마도 주에게 통보
		筑前州 氏鄉	沙斗沙也文		
		肥前州 小弼弘	毛利皮沙伊文		
		薩摩州 盛久	仇羅沙伊文		
35	성종 04 06 30(기축)	肥前州 源德	江間都老	서계에 찍은 도서가 사급한 도서와 다름	
36	성종 05 11 신유(10)	對馬島 仇女人		고초도조여금약 위반, 병기소지	제포하여 대마도에 보냄
37	성종 05 11 신유(10)	菊池重朝	守主師	菊池爲邦 使者와 동시 도항	대마도주에게 진위 를 밝혀주도록 요구
38	성종 05 11 신유(10)	多多良 教之		1472, 1473년 세견선 중첩 파견	접대
		對馬島主		1473년 세견 25선 중 첩 파견	
39	성종 07 02 병술(12)	宗貞秀	多難酒毛등	세견선 중첩(1474년) 파견	대마도주에게 통보
		宗成俊	都小只		
		秦成幸	時難酒毛		
		教之	難延都老		
		源實次	都汝文		
		藤熙久	老仇難酒毛		

152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제2분과 편)

39	성종 07 02 병술(12)	家次	信汝文	세견선 중첩(1474년) 파견	대마도주에게 통보
		爲幸	陳小只		
		忠吉	信汝文		
		源吉	皮古汝文		
40	성종 07 02 병술(12)	源實次	多而小而文	세견선 중첩(1475년) 파견	대마도주에게 통보
		持平	三甫羅汝毛		
		藤熙久	可文老愁戒		
		忠吉	舍交老愁戒		
		宗成俊	竹本邊 沙也文		
		宗茂世	沙同古羅		
41	성종 14 06 계해(02)	原忠	사인	미정약자가 도주의 서계를 가지고 도향	송환
42	성종 14 11 14(계묘)	長門州 赤間關太守 矢田 藤原貞重	上官人 堅座兒	세견선 미정약자	과해량 없이 송환
43	중종 04 07 06(병신)	日本國 源義	仇羅沙也文	이미 죽은 자의 도서 사용	접대는 거절하되 도로 에서 굶지 않도록 함
44	중종 28 07 14(을묘)	日本國 小貳殿	藤朝秋	기한이 지난 문인 소 자, 중간에서 사칭	사인의 진위가 의심스 러지만 후대
45	명종 03 03 18(계사)	日本國 畠山殿	사인	통신 단절자의 재통교	도서 확인후 접대
46	명종 08 11 29(신미)	左武衛殿	사인	통교 단절자, 사절명 칭과 도향일자 위조 흔적	牙符가 부합하면 접대 허용

\* 위의 표는 『조선왕조실록』(태조-선조)과 한문종 「조선전기 통교왜인 일람표」(전북대 박사논문 참고자료, 1996)와 伊藤幸司<僞使の時代>(村井科研福岡 심포지움 發表要旨, 2002)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 통교년월일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날자임.

# 토론 녹취문

- 주 제 : 조선전기 왜인통제책과 그 위반자의 처리
- 발표자 : 한문종 공동연구원
- 일 시 : 2003년 12월 20일(11:10-13:00)
- 장 소 : 동경, 일한문화교류기금 회의실
- 참석자
  - 한국측 : 손승철, 조광, 정구복, 한문종, 홍성덕, 박재광
  - 일본측 : 吉田光男, 田代和生, 六反田豊, 伊藤幸司, 米谷均, 橋本雄

## 토론문

吉田： 그러면 시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발표하시기 전에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伊藤： 얘기해도 됩니까. 네, 伊藤입니다. 일본측에서 위사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어서, 우선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내용에서 두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1 서론’에서 일본측의 연구, 즉 米谷・橋本・伊藤의 위사에 관한 정의에 대하여 그, 뭐 한선생님이 위사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하셨습니다. 그 결과 한선생님은 더 포괄적이고 광의적인 위사라고 할 수 있는 ‘통교위반자’라는 시점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선생님께 있어서의 위사의 정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저어, 저는 위사라는 것은 조선의 왜인통제책을 통교위반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더 우위에 선 무역권을 획득하기 위해 창출된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 현대적인 시점으로 内實을 살펴보면 위사행위는 통교위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때 완전히 같은 수준, 같은 시점으로 의논해도 되는 건가요.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2번의 왜인통제책 실시배경. 저어, 제3장의 왜인통제책의 내용 부분은 中村榮孝氏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제4장 통교위반자의 類型 및 처리라는 부분이 한선생님의 보고 가운데 주요부분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1페이지에서 지적하신 제 논문『僞使の時代』라는 성과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서론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으므로 역시 여기서도 언급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석 번호로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39, 40, 41, 43, 50, 51, 53, 54, 60, 80, 81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吉田： 네. 크게 세 가지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저, 어떤 순서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한문종： 네. 먼저 통교 위사의 개념 기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측이 생각하는 위사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위사하고는 개념이나 범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

다. 제가 생각하는 위사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왜인 통제책을 위반해서 조선에 들어온 사람이나 그렇게 의심이 되는 사람을 위사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통교 위반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입장에서는 통교자의 진위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서계, 도서, 문인, 그리고 전상, 회사라고 하는 외교의례만 합당하면, 위사의 진위 여부는 별 관계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사에 대한, 위사라기보다는 통교 위반자에 대한 정의를 도서, 서계, 문인을 위조해서 왔거나, 그것을 위조해 왔다라고 의심이 되는 사람을 통교 위반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인 통제책의 실시 배경하고 왜인 통제책의 내용은 伊藤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로 中村 선생님의 논문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부분의 경우에는 제 학위 논문에 中村 선생님의 견해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짧게 줄이는 과정에서 中村 선생님의 업적이나 또는 참고 문헌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 주장하고, 中村 선생님의 주장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왜인 통제책에 있어서 문인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문인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 국내에 적용이 되는 제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법전이나 또는 조선총의 자료를 통해서 밝히고, 또 그것이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다. 또 이와 같은 문인의 발급은 주로 조선의 관리들이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에 적용이 됐던 행장, 노인, 문인이 왜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하려고 거기에 써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계해약조 부분에서 계해약조의 정약이 세종 25년 8월에서 10월경에 대마도에 파견되었던 체찰사 이예가 주도를 했고 또, 신숙주는 그 과정에서 대마도주를 설득해서 조약을 체결하는데 일조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伊藤 씨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伊藤 씨의 논문이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 그렇지만 주에서 伊藤 씨의 논문을 인용하지 않은 것은 제가 전부 원천을 찾아서 제 나름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伊藤 씨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보완하고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伊藤 : 얘기해도 됩니까.

吉田 : 그럼 伊藤씨.

伊藤：저, 죄송합니다, 위사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다르다, 한국과 일본과는 다르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절이 진짠지 가짜지 하는 부분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고, 외교의례에 맞으면 된다고,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예를 들어 夷千島王이라든가 九辺國主라는 수상한 명의로 사절이 왔을 때에는 조선측에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혹은 도서가 찍혀져 있어도 그 도서가 5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의례적으로는 맞는데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진짜·가짜는 문제가 아니고 외교의례에 맞으면 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 연구에 대한 부분이, 저, 원전을 찾으면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정말,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문종：네 먼저. 위사의 개념 범위가 다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의 연구가 위사에 대한 개념 정의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위사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조선측에서 볼 때 통교 위반자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조선이 요구했던 외교 의례를 벗어난 사절인 경우에도 접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 정부가 왜인 통제책을 정확하게 적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미온적인 태도로 적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례를 아까, 九辺國使나 夷千島王使를 예를 들고 있는데, 夷千島王의 사례의 경우에도 조선측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하면, 일단 夷千島王의 서계와 예물을 받은 이상 이들을 대접하고, 조선측의 외교 자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교인과 또 외교 사절은 구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위사로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절은 외교 사절이 아니라, 저는 통교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 때문에 위사라고 하는 표현 보다는 통교위반자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伊藤 상의 연구 업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伊藤 상의 연구 성과가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伊藤 상이 지적한 것 이외에도 여러 사례들이 여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伊藤 상의 연구 업적을 제 논문에 소개하지 않은 것, 이것은 앞으로 제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吉田：아, 이쪽 분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손승칠 선생님.

손승철 : 지금 위사의 개념에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유구관계에서, 유구위사를 한번 정리한 짧막한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구관련 기사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유구관련 사절들은 전부 유구국 사자, 또는 유구국사, 또는 유구국왕사의 명칭으로 사료 자체에 사신이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서 왕조실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구국에서 오는 사신이 위사인지 아닌지가 구별하기가 그래도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구국사를 가지고 위사 문제를 제가 논문 중에 언급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대마도라든지, 또는 일기라든지, 또는 큐슈라든지 일본 서부 해안지역에서 오는 일본인들을 전부 사신으로, 사자로 취급하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의 사료를 보면 이것이 분명한 외교 사절인지 아니면 단순한 통교자인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엉켜 있기 때문에 아마 양쪽에서 이야기하는 위사의 개념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입장은 앞으로 조정을 해 가면서 개념을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北島 : 北島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쪽은 통교위반자, 이쪽은 위사라고. 그러니까 표현은 어떻든 간에 그 實態가 다른 건지 같은 건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것은 실태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吉田 :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문종 :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측이 생각하는 위사하고 제가 생각하는 통교 위반자는 실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측의 통교위반자, 또 조선측의 아, 일본측의 위사, 조선측의 통교위반자를 보면, 조선측에서는 위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사라고 할지라도, 위사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조선에서 요구하는 외교의례에 합당하면 위사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北島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吉田 : 사실관계가. 아, 六反田씨.

六反田：六反田입니다, 실례합니다. 저어, 그러면 이 한문종 선생님이 쓴 논문의 1 페이지 부분 「조선의 왜인통제책을 여러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위반하면서 도항하는 왜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을 일반적을 위사라고 칭하였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누가 그렇게 불렀다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라고 나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본과 한국의, 그 위사에 대한 개념은 상당한 다른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은 당시 조선인들이 이렇게 불렀다는 것인가요? 이 부분이 좀 헷갈려서요. 최소한 여기서 쓰신 것 같이 그, 저, 위반자를 위사라고 부르는 것, 일본의 연구자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문종：제가 거기에서 위사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일본측의 연구가 주로 위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에는 위사라고 하는 표현은 안 썼는데, 일본측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면서 이 부분만이라도 위사라고 하는 표현을 써 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위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위사라고 칭했는가 누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六反田：한 마디만 말씀드려도 됩니까.

吉田：네, 말씀하세요.

六反田：저어, 그, 한문종 선생님의 설명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본측에서 위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셨다는 것인데요, 이 문맥에서 위사라는 말을 사용하시면 그건 역시 일본에서 사용되는 사용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안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문종：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본의 위사에 대한 개념이나 기준에 대한 정의를 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吉田：이제 슬슬 시간이 됐습니다. 나머지 또 한두 사람, 네, 손승철 선생님.

손승철：조선왕조실록에는 정확하게 위사 부분에 대해서 명칭이 어떤 명사로 나오고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 수 있나요? 혹시 예를 들 수 있으면은...

한문종 : 위사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몇 사례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도서를 위조, 위작해 왔다든지, 서계를 개찬해 왔다든지 하는 표현을 썼지, 위사라고 하는 표현은 몇몇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吉田 : 네, 성함을 말씀하세요.

田代 : 田代인데요. 그, 한국에서는 위사연구가 그렇게 진전되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문종 선생님의 연구가 한국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는 위사연구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한문종 :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구에 관한 연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승철 선생님과 하우봉 선생님의 논문에 약간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만 통교 왜인에 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田代 :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위사는, 진짜 도서를 가져가면 위사가 아니다는 것인가요.

한문종 : 네.

田代 : 진짜 도서를 전혀 다른 제삼자가 사용한 경우, 그 사절은 위사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한문종 :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에서 요구하는 외교의례, 도서, 서계, 문인 중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면, 위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田代 : 문제로 삼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삼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 한문종 선생님이 신가요, 하니면 조선국인가요.

한문종 : 조선왕조에서는 다른 명의의 위사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명칭의 사절을 파견했을 경우 조선에서

는 그것이 위사로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위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田代：가짜 사자라는 것은 진짜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진짜에 가까  
우면, 들키지 않았으면 위사는 성공입니다. 들키지 않았다, 속이는 데 성공한 예  
가 위사가 아닌가요.

한문종：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田代：이제 완전히, 일본측의 인식과 한문종 선생님이나 한국의 연구자들의 인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문종：네. 그 점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측 통교위반자의 연구자와 일본  
측 위사연구의 가장 큰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절을 사칭해서  
온다든가 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국내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吉田：네,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에 한사람, 伊藤씨.

伊藤：위사는 일본 국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시 조선왕조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  
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사를 정의할 때 시간이 다 돼버  
렸는데요, 제가 지적한 또 한 가지, 선행연구에 해당되는 제 연구가 안 나와 있  
는 부분에 대해서, 원천을 찾았다던가, 사례를 증가시켰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  
라, 이것은 일본에 있어서도 한국에 있어서도 중대한 매너위반이 아니냐는 점을  
마지막에 항의하겠습니다.

한문종：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위사의 개념에 대한 문제는 역시 일본측과  
한국측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伊  
藤 상이 말한 연구 업적에 대해서는 제가 주에 참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논문을 작성할 때 관련 부분은 제가 참조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伊藤：나중에 참조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뭔가 한마디 없으신가요.

손승철 : 저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얘길 합시다. 뭘 어떤 부분을 인용을 했는데 언급을 안했다고 그러는건지요?

정구복 : 보완하겠다, 그 자료에 대해서 참조하겠다고 하지만...

吉田 :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伊藤씨의 연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 논리는 세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 부분을 나중에 보완하면 된다는 것은 좀... 伊藤씨의 연구성과를 말입니다, 논문을 작성하신 방법에 꽤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伊藤 : 잠깐만요. 한선생님이 제 연구를 모르신다면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처음 비판 대상으로 언급하시면서 한편에서는 거론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한문종 : 伊藤 선생님이 지적한 질문은 어떻게 보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만 거기에 제시되었던 원전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거나, 또 제 의견과 다를 경우, 그 경우에는 주로 처리해도 되지만, 단순히 사례를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주를 처리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승철 : 아니, 저기 지금 거기에서 논문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쓰신 분이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했으면 됐지 지금 여기에서 무얼 원하시는 겁니까? 완성된 논문이 아니니까 지금 중간 단계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

田代 : 이것은 역사학연구에 있어서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선행연구,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경우 그 사람이 처음 발표한 논문, 그것을 역시 존중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의견을 가할 경우에는 그것을 역시 인용하면서 의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처음 발견한 사람처럼 꾸미고, 그리고 제일발견자인 것 같은 논문을 쓴다는 것, 이것은 역시 역사학연구에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한문종 : 그렇다고 한다면, 伊藤 씨의 논문에 인용했던 모든 조선왕조실록의 원전을 제가 인용한 문으로 기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田代：처음 발견한 사람의 사실이라는 것은 역시 존중해야 한다고, 그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요.

손승철：제가 보기에는 사료는 큰 문제가 안되고, 왜냐하면 조선왕조실록은 저희가 항상 옆에 두고 보는 책이거든요, 그 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료에 대한 예를 들어서 伊藤 선생의 생각하고 한 선생의 생각하고 다르다 할 경우에는 거기에 주를 분명히 처리해 줘야 하지만, 맨날 보는 사료를 갖다가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지금 여기서 보면 열 개가 넘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주를 답니까? 그리고 의견이 다를 때만 앞으로 보완을 하면서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애긴 더 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합시다.

吉田：다른 한국의 선생님들, 뭔가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구복：정구복입니다. 위사 문제가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한일 양국의 공동 연구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오늘 상기했습니다. 그 중요한 차이는 전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이 조선왕조에서는 일본 상인들까지를 전부 사신으로 파악한 것이 일본측 견해와 다른 중요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조선왕조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국제법상의 정식 사신만이 아니라 외국인으로써 통교, 장사를 하러 온 사람들도 전부 사신으로 파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파견된 사신과 그리고 그런 목적이 없이 단순히 장사를 하기 위해 온 전통적인 개념의 사신을 구분해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吉田：죄송합니다. 시간이 벌써 30분 이상 초과했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에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伊藤씨도 스스로 생각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한문종 선생님도 그에 대한 반론을 하셨습니다. 저, 다른 이야기들은 또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의논에 들어가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소를 바꿔서 점심식사를 하기로 합니다(끝).